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1. 체약국 자동차에 대한 운행표 발급 제한 및 회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 자	이름	박균성
	담당부서 (과)	자동차정책과		직급	공업사무관
	국장	김상석		연락처	044-201-3843
	과장	윤진환		이메일	kyun0163@mail.go.kr

자동차관리관 김 상 석(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체약국 자동차에 대한 운행표 발급제한 및 회수			
	2.규제조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3.위임법령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출입국관리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16~'20.1.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의 검역 적정성, 오페수 방류, 양식업계 반대 등의 문제 제기(국민청원 21만명)			
	7.규제내용	○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 등의 운전자가 오페수 방류, 과속, 신호위반 등 국내법 위반시 운행을 제한 * 현행 : 체약국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체약국자동차로서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국내 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등) ①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u><신설></u>	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 등)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u>④등록관청, 경찰공무원("운행표" 회수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행표"를 위반한 날로부터 1년간 발급(재발급 포함)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재발급 포함)하지 않거나 회수하여야 한다.</u>

	1. <u>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가 속도, 신호·지시 위반 등 연간 3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u> 2. <u>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 오염물질, 제15조제1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지정폐기물·유류·유독물·농약,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 오염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제18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방사성 폐기물 또는 이러한 물질 등이 섞인 오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u> 3. <u>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가 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이 적정하지 않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자동차 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및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내 도로까지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의 ①검역 적정성, ②오페수 방류, ③양식업계 반대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 일본 활어차의 국내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과 종합적인 대응책 부재로 국민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국내법 위반 체약국 운전자에 대해 국내 차량운행을 금지토록 국제 교통자동차운행표 발급을 제한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할 필요

* 방사능 등 검역철저·오페수 방류 단속 등 국민청원 제기(청원마감 21만 3천명)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국내법을 위반한 체약국 운전자에 대해 등록관청, 경찰공무원(운행표 회수에 한함) 등이 1년간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를 거쳐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3. 규제목표

국민 불안 및 우려 해소를 위해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오염 해수 무단 방류 방지 및 체약국 자동차 운행시 국내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토록 하려는 것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도로교통법, 물환경보전법 등 국내법 위반 체약국 자동차 운전자의 국내 차량운행을 금지토록 **운행표 발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국내 환경오염 방지 등 국민의 불안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내법 위반 체약국 운전자에 한해 국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체약국 운전자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같은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 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제로서, 일몰설정 대상(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 없음

○ 타법사례

-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도 체약국 운전자(피규제자)의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재제 등의 조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약국 운전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공포일 이후부터 규제집행이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등 검역 철저·오폐수 방류단속 등 국민 청원 제기(청원마감 21만 3천명)
- 일본 활어차의 국내운행을 통한 실제 문제점과 무역수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국조실 주관) 논의('19.7.30/'19.9.9)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제출 및 개정('19.12)

- 자동차 특례규칙 제6조 제4항 추가하여 국내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1년간 운행표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 향후 평가계획

- 국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특례 규칙 개정에 따라 일시수출입 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등 운행표 교부 거부 집행기준 마련

3. 종합결론

- 일본 활어차의 방사능 오염 해수 무단방류 의혹 등 국민 불안요소 해소를 위하여 국내법 위반자에 대해 운행표 발급 제한 및 회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